

이 7일 이상 군무를 이탈하거나 그밖에 중대한 잘못이나 범죄는 일반법원의 심판대상이다.

### (3) 군사법원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캐나다 :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 심판관으로 구성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덴마크 : 군인의 신분을 갖는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가 있으나 지휘명령계통 밖에 있다. 수사권한 및 경범죄에 대한 사법권한을 가진다(견책, 벌금 및 30일 내의 영창부과). 대부분의 중범죄 및 경한 처벌에 대해서도 군인이 항소하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통상법원 즉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이 넘어간다.

영국 : 군사사법을 담당하는 특별부대는 없다. 5년마다 특별법에 의해 법원이 구성된다. 군사법원이 구성되나, 중범죄(살인, 강도 등)는 역사적으로 군사재판의 관할대상이 아니다. 최근 군사법원제도를 개혁하였다.

폴란드 : 군 판사 임용이 독특하다. 군 판사평의회의 추천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스위스 : 군사법원의 구성원들은 전문법학교육을 받은 민간인들 중에서 임명하며, 임명 뒤에도 민간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한다.

미국 : 전 세계에 미군을 파견하고 있으므로 부대와 함께 움직이는 군사법원, 군사법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군사법원제도(군사법제도)는 그 나라의 사법(司法)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제도를 채택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1965년이래 16년에 걸친 개혁논의 끝에 지금과 같은 제도를 채택했다. 시대의 요청에 맞게 군사법제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개혁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군사법제도개혁 논의와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 (4)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법제도개혁

#### ◆ 프랑스

군사범죄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의 기소 및 재판에 관한 법률이 군사법원을 폐지하기 전에는 프랑스에서도 군사법원이 있었다. 위의 법률은 1982년 7월 22일이 공포된 뒤 1983년 1월 1일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1965년 제정된 형사절차 및 군 형사사법법률을 개정되었고 상설 군사법원제도는 폐지되었다. 1982년의 개혁은 평시에 군사사법기구를 두는 것은 프랑스 형사사법상의 기본원칙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관철된 결과였다. 그 기본원칙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형사사법의 통일성원칙인데, 절차적 관점에서 성립된 원칙이라 하겠다. 즉 모든 시민은 형사사법당국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일단 형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한 사법당국, 동일한 규범에 의해 재판 받아야 한다.

둘째, 전자의 당연한 결과로서, 민주주의 정부는 형사문제를 다룰 특별사법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군사법제도는 ① 군 당국이 기소를 담당하고 ② 군사법원에 군 판사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점에서 군사법권은 특별사법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방위의 요청과 국제조약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군사법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의 원리에 근거하여 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즉 ① 개정법률은 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규정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만 적용한다. ③ 해외 파견부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파견부대에 적용될 군사재판제도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군인은 민간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특별법원은 설립되지 않으며, 민간법원 내에 군사범죄에 대해 다룰 특별부를 설치한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 검찰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평시, 국내에서의 군사법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군사범죄에 대한 예비조사, 예심, 심문, 사법심사에 똑같이 적용된다. 사법경찰의 활동도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군사범죄에 대한 조사여부의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한다. 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 검사 및 예심담당판사는 군 당국에 대해 군사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신청을 한다. 이 신청이 허가된 뒤에는 군 당국은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한다. 물론 수사를 할 때에는 군 당국과 협력하여 군사기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기타 군 지휘부는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 기소권한은 오로지 토지관할권을 갖고 있는 검사만이 갖고 있다. 검사는 자신이 취합한 사실관계(특히 국방부장관이 제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당국에 의해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판단한다.

프랑스는 미국처럼 군대를 해외에 다수 파병하는 국가도 아니므로 프랑스는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한 나라로 볼 수 있다.

#### ❖ 영 국

군 당국은 군 형법상의 범죄(통일된 법전은 없으나 동일하게 49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규정한 법률이 각 군에 있음) 외에도 군인이 범한 일반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살인(謀殺과 故殺을 모두 포함), 강간과 같은 일부 중범죄는 민간법원이 심판한다(다만 이러한 범죄가 군인에 의해 해외에서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군사재판을 받는다).

이러다 보니 종종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 관할권상의 다툼이 발생한다. 이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이 관할법원을 결정하는데,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으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당해 범죄가 부대 시설 내에서 일어나거나, 범죄의 효과가 군인에게만 미치는 경우에는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군사법권은 군법회의(정식 군사재판) 혹은 약식절차 등 두 가지 방식에 의해 행사된다. 일반사병 혹은 단기장교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지휘관에 의해 약식절차가 개시된다. 지휘관은 위법행위자를 60일까지 영장을 살게 할 권리가

있다. 최대 28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약식절차는 단기간의 군무이탈, 합법적인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 주로 가벼운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대개의 위법행위는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보다 더 무거운 위법행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군법회의가 개최된다. 지구군법회의의 장은 소령 혹은 중령이 맡으며, 최소 3명의 장교가 참여한다. 보통군법회의의 장은 대령 혹은 준장이 맡으며 최소 5명의 장교가 참여한다.

법률전문가들이 아닌 이들은 보통법원에서 배심원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두 군법회의에는 영국의 최고판사인 대법관에 의해 임명되는 민간인 판사가 한 명씩 참여한다. 이 민간인판사만이 법률문제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는 또한 군법회의에서 일반적인 자문역을 맡는다. 지구군법회의는 최대 2년의 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으며 장교를 심판하지는 못한다. 보통군사법원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상은 육군과 공군에 해당되는 설명이며, 해군에서는 군사법권이 행사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한 영국의 군사법원제도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1997년의 유럽인권법원에서 다루어진 ‘핀들리 대 영국 사건’을 계기로 대폭 바뀌게 된다. 이 핀들리 사건은 우리의 군사법원법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8)</sup>

원고인 핀들리는 포클랜드 전쟁 참전 후 중대한 정신장애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동료에게 총으로 위협한 일 때문에 군법회의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영국의 군사법원제도의 위법성을 유럽인권법원에서 다룬 것이 이 사건이다. 동법원의 판결에서 영국의 군사법원제도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보장하고 있는 ‘독립·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법회의 소집권, 군법회의에 참여할 장교선임권, 군 검찰관 임명권을 모두 한 사람이 갖는다. 군의 지휘명령계통에 있는 지휘관이 — 지구법원의 경우에는 통상 준장,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소장 — 바로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 그는

38) <http://hudoc.echr.coe.int/Hudoc1doc/HEJUD/sift/602.txt>에 판결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음.

기소에 대한 통제권도 갖고 있다. 그 결과 그의 허가가 없어 군 검찰관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는 군법회의를 해산할 수도 있다. 자신이 승인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군법회의를 해산하고 새로운 군법회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군법회의가 확정한 결정과 판결 또한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는 결정과 판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형량을 늘리지는 못한다). 결국 군법회의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영국인들은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폭넓은 권한이 남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편들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부적절한 권한행사는 없다고 항변했지만, 유럽인권법원은 권한의 남용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영국의 군법회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편들리 판결 이후 영국은 법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소집권자의 권한은 제거하였다. 특히 세 가지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군인이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지휘관이 먼저 그 사건의 고소·고발 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결과 사건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자신의 상급자(통상은 준장)에게 넘겨야 한다. 사건을 이송 받은 상급자가 보기에도 군법회의감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은 군 검찰국(혹은 군 소추국)이라는 새로 설립된 기구로 넘어간다.

둘째, 사건을 군법회의에 기소할 것인지, 기소한다면 어느 군법회의에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군 검찰국만이 할 수 있다. 형사소추는 이 부서에 속한 범조인 자격 있는 장교가 담당한다. 군 검찰국은 군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최고위 군 지휘부라도 피의자를 군법회의에 기소하는 군 검찰국의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셋째, 군법회의는 군법회의 소집할 권한을 법률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장교(군법회의 소집관이라 함)에 의해 소집된다. 이 장교 역시 군 당국과 군 검찰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 사람만이 군법회의에 참여할 장교를 임명할 수 있다. 원

래 사건을 군 검찰국에 의뢰한 지휘관의 지휘아래 있지 않은 장교만이 군법회의 참여장교로 임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군법회의에 참여하는 장교들은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sup>39)</sup>

#### ◆ 소 결

영국의 군사재판제도에 대해 보고한 토마스 글린 준장(이탈리아 주재 영국 대사관 무관)은 영국인들은 편들리 판결을 접하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세계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군사재판과 관련하여 권한남용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국의 군사재판제도를 유럽 인권법원의 내린 기준에 맞게 고쳤다는 사실이다.

영국 군대 내에서 한해에 3백명 가까운 의문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로부터 군사사법 시스템 상의 잘못을 지적 받자 곧바로 군사사법제도를 개혁하였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게 많다.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군사사법제도 개혁논의와 그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는 평시에는 군사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대와 관련한 위법행위·범죄에 대한 판단권은 민간인, 민간법원이 갖고 있다. 영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민간법원의 관할권을 인정

39) 이 부분은 현행 군사법원법 상의 심판관제도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심판관은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자로서 군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 군사재판에서 심판관은 본문에서 지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영미식 배심제도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배심제도의 정신과 달리 피심판자와 동급의 병사나 장교가 아니라(독일에서는 이렇게 한다) 피심판자 보다 상급의 일반장교가 심판관을 맡고 있어 원래의 취지보다는 군 판사에 대한 관할관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법재판소는 심판관제는 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93헌바25).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군사 재판에 참여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모든 재판에 심판관을 참여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군대 내의 명령불복종 및 군사비밀에 관련된 재판에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참여시키는 것과 군대 내의 살인, 절도, 폭행죄에 대한 재판에 심판관이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전문법조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해왔다. 어느 경우든 군 의문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군 수사당국과 군 사법 기구의 관여와 관할을 배제하는 셈이다.

둘째, 영국 군법회의 상의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에서 지적하였듯이 군대 내 대부분의 사건은 약식절차로 끝날 경미한 위법행위·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군 사법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할권은 약식절차의 대상이 될 경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 사건은 민간법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군 사법원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로 국방부는 '지휘권 유지·확보'를 들고 있지만,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그와 같은 사건으로 제한해도 지휘권의 유지·확보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군형법 체계는 개정하여 군 내부의 지휘명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일반 형사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프랑스는 군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를 일반 사법경찰과 검찰에 맡기고 있다. 영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군 검찰국(군 소추국)과 같은 군 지휘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에 맡기고 있다. 당장에 우리의 군사법원법을 프랑스식으로 고칠 수가 없다면 적어도 군 검찰국만이라도 영국식으로 개혁하는 입법적 노력을 해야 하겠다. 군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군에서 검찰로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군 체계가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군 사법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군 체계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군 체계가 다른 게 아니고 50년 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강력한 안보논리, 군사기밀을 보호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식의 반론이 통하고 실제로 먹혀들어 갈 뿐이다. 군대에서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사치였고, 모든 게 지휘권으로 정당화되던 시절의 논리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뿐이다.

#### 4. 징병제도에 대한 재검토

최근 들어 양심의 자유, 특히 양심적 집총거부와 관련하여 징병제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징병제는 개개인의 능력, 가치관, 삶의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 나이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의문사에 원인(遠因)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실제적으로도 의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군 사망사고는 거의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서 발생한다.

위 <표 7>에서 살펴보았듯이 훈련병, 일등병, 이등병이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 사망자의 54.3%나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원인과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고 사망구분이 이루어진 후에 유족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집중되어 있다.<sup>40)</sup>

<표 13> 국방부 특조단 접수 민원의 계급별 현황('99. 4. ~ '00. 3. 접수)

계	장 교		부 사 관		병	
	대위 이상	중위 이하	중사 이상	하사 이하		
계	166	4	10	10	19	123

사망 당시의 신분으로만 보면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중인 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의혹제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대위 이상, 중사 이상의 군인이 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내 사망사고의 조사와 보상과정에서 장기복무 중인 자에 비해서 의무복무 중인 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들보다는 군의문사, 특히 많은 자살사고의 경우 그 원인과 동기가 입대 당시나 부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잉태된다는 점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sup>41)</sup> 이러한 사정은 군으로 하여금 의무복무를 하고자 하는 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적응과정에 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징병제도가 군의문사, 특히 자살사고와 일정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비의 축소와 평화의 정착을 통하여 징병제가 폐지되고, 지원에

40) <표 13>은 국방부 민원제기사망사고특별조사단, 전계문현에 수록된 사례들을 정리한 통계이다.

41) 위 <표 8>의 자살동기 통계에 따르면 복무부적응이 무려 41.7%를 차지하고 있다.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군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군 의문사를 방지하기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자원에 대한 국가와 군의 배려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육체적·기술적인 신병훈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군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훈련과정과 배치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42)</sup>

## 제7장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sup>43)</sup>

### 1.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와 참관단의 구성

한국은 50년 간 징병제가 실시된 나라이다. 지난 50여년간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등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투옥되었고, 현재도 1천3백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민간과 군대의 교도소에 갇혀 있다. 분단과 군사독재가 계속되어 온 한국사회에서 징병제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각 방면에서 민주화를 이루어 왔다. 그 성과는 아직 만족할만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현된 하나의 특징은 인권운동의 부각이다. 지난 시기 의문사, 고문, 불법체포, 폭력적 시위 진압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인권운동의 시각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장애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져 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물론 지금도 술한 노동자와 학생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우리나라에 1천3백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전부 여호와의 증인으로 국가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우리 사회에서 이단자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뒤늦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2월 7일 『한겨레21』 345호가 ‘마이너리티’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보도한 이래 이 문제는 각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42) 따라서 신병을 군 생활에 어떻게 적응시키느냐의 문제 역시 군 자살사고, 사망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신미옥, “신병교육훈련이 훈련병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오수종, “신병교육훈련생의 자아 실현과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등 참고. 특히, 오수종, 전개논문, 60p.는 전문사회복지사의 한 태양으로써 “군 사회복지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군 사회복지사의 도입으로 신병 등의 적응과정을 돋는다는 생각은 훌륭하기는 하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징병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3) 이 글은 『황해문화』 2001년 가을호(32호)에 한홍구 교수가 쓴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군 정예화의 교수-타이완의 대체복무제’라는 글을 옮긴 것이다.

한편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예비역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들을 공격했다. 이 문제는 최근의 부산대 여학생들의 웹진『월장』이 학내의 예비역 복학생들의 행태를 비판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군사주의의 폭력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런 경험은 군대가 남성우월주의의 ‘마초 문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는 진원지라는 인식을 여성활동가들 속에 심화시켰다.

30년의 군사독재와 50년의 징병제를 겪은 병영국가 한국에서 군사주의와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놀라울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몇 편 안되는 글도 박노자 교수와 같은 외국인학자나 권인숙 교수 같은 여성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을 뿐, 정작 군대생활을 체험한 남성학자나 활동가들은 이 문제에 침묵을 지켜왔다.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군가산점 논쟁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30일『한겨레21』 301호가 특집으로 「징병제를 혼들어라!」라는 기사를 다룬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 후 2001년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권인숙 씨가 폐미니즘 시각에서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고, 3월 16~17일 이를 간 파주에서 70여명의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모임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을 포함한 느슨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공동대책위가 조직되어 지난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가 종로성당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5월에는 임종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민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국선변호인이 아닌 민선변호인단에 의한 법률구조가 시작되었다. 또 6월 초에는 김삼석씨가 『반갑다, 군대야!』라는 책을 발간하여 민족민주운동 입장에서 군대 문제를 파헤쳤다. 한편 경찰은 파주 회의가 있은 직후인 3월 20일 ‘군대반대·병역기피 사이트’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여 민간진영에서의 징병제 반대운동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타이완은 2000년 7월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의 활동가들의 큰 관심을 끌어 파주 회의에서는 타이완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의 입법위원(국회의원) 치엔시치에(簡錫階) 씨를 초청하여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2001년 3월 22일『한겨레 21』 351호는 타이완 현지취재를 통해 이 제도를 국내에 소개했다. 파주회의 참가자들은 우리와 같은 병영국가였던 타이완에서 이 제도가 실시된 데 대해 비상한 흥미를 가졌고, 치엔시치에 의원이 집행장으로 있는 타이완 촉진화평문교기금회의 초청으로 7월 8일부터 일주일 간 타이완을 방문하여 이 제도의 실시현황을 직접 돌아보고, 정부관리, 입법위원, 시민운동가, 대체복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타이완 방문이 확정된 이후 3월의 파주 회의와 5월의 토론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참관단이 구성되었다. 참관단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이석태 변호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군경전사순직자가족협의회의 이애련 회장, 최영금 선생, 인터넷 신문『대자보』의 이창은 발행인,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홍창욱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윤 차장,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 임치윤 씨 등과 베트남전진실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포함되었다.

참관단의 주요 일정을 소개하면 도착 다음날인 9일에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천신민(陳新民) 교수와의 토론, 이 제도를 추진한 사람들의 방법론 교육, 10일에는 타이완 여호와의 증인 본부 방문, 이 제도의 담당 주무부서로 우리나라의 병무청 격인 내정부 역정사(內政部 役政司) 방문,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양로원과 정신지체자 학교 방문, 11일에는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소방서, 시각장애인 학교, 사회봉사센터 방문 및 내정부 부장 접견, 12일에는 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한 입법위원들과의 토론회, 사회복지단체 활동가들과의 토론회, 타이완에서 군대 내 의문사 등의 해결과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황마마(黃媽媽) 어머니 방문, 13일에는 기자회견, 황마마 어머니 등 군대 내 순직자, 폭력에 의한 피해자 가족 면담, 촉진화평문교기금회 회원 및 타이완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등이었다.

## 2. 타이완에서의 대체복무 제도의 추진과정

치엔시치에 의원은 1996년 2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당시에는 ‘사회역’이라 부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 역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타이완대학 학생회 등 주요 대학의 학생회들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치엔 의원은 학생회와도 접촉하기 힘들어 몇몇 동아리를 찾아다니며 동아리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치엔 의원 등이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자 병력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은 대체복무 제도 도입운동에 돌파구가 뚫린 것은 1997년 7월 국방부가 「국군정실방안(國軍精實方案)」을 채택하여 군 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부터였다. 한편 치엔 의원은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군복무기간의 단축을 추진했다. 군복무 기간의 단축 없이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제기되자 짧은이들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8년 7월 치엔 의원은 「타이완의 희망의 복무 - 사회역」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이 제도의 장점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만화가이기도 한 치엔 의원은 이 소책자의 삽화를 직접 그렸다.

이런 활동과 병행하여 치엔 의원은 사회복지단체를 찾아다니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수많은 짧은이들이 배치될 수 있어 사회복지의 질을 급속히 향상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처음에는 군인들이 와 봐야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시큰둥했다. 그러나 치엔 의원 등이 유럽국가의 예를 들면서 대체복무 제도의 장점을 끈질기게 설명함에 따라 사회복지단체들도 이 제도를 지지하게 되었고, 1998년 8월에는 2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역민간 추동연맹」이 결성되었다. 추동연맹은 1999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원주민복지 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널리 선전했다.

한편 김군안 실시 이후 병력 자원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행정원도 대체복무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3월 행정원 내에 전담반이 구성되었고, 8월에는 이 전담반의 핵심요원들이 치엔 의원, 국방부 고위관료 등과 함께 유럽을 방문하여 여러 나라의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현황을 시찰하였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도의 실시가 국가의 당면이익에 부합되며, 앞으로 1년간 이 제도의 준비를 정부의 주요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

1999년 5월에는 입법원 내에 「초당파 사회역 추진소조」가 결성되었는데, 225명의 입법위원 중 78명이 참가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격인 행정원장은 정부가 2000년 7월부터 사회역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원 내정위원회는 또 치엔 의원 등이 제안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내지 5개월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사회역의 복무 기간도 이에 상응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무렵 사회역 추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많은 짧은이들이 접속하여 이 제도를 알게되고 지지의 폭을 넓혔다. 이런 여론의 지지와 병력을 줄이는 대신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군부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방부도 태도를 바꾸어 사회역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1999년 9월 21일 타이완 중부인 타이중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이재민 구호와 복구건설의 긴박함은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에 힘을 보태주었다.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여호와의 종인 문제를 중심으로 촉발된 것에 비해 타이완에서 여호와의 종인 등 종교적 양심범에 관한 논의는 뒤늦게 1999년 10월에 제기되었다. 타이완의 경우 여호와의 종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복역 종인 사람은 당시 40여 명에 불과했다.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어 관계인사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는 인권존중과 병역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의 기독교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침내 2000년 1월 15일 입법원은 「병역법 수정안」과 「체대역(대체복무) 실시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제도는 2000년 7월부

터 시행되었다.

타이완에서는 2000년 3월 18일 총통선거가 실시되어 야당인 민진당의 천슈이 피엔(陳水扁) 후보가 당선되어 50년이 넘는 국민당의 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즉,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는 민진당 집권 이후이지만, 이미 국민당 통치 하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방침과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민진당의 집권이 이 제도의 정착과 확대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당과 군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할 일이다.

### 3.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처음 치엔 의원과 민간단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추진할 때의 명칭은 사회역(社會役)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외교(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명칭도 체대역(替代役)으로 변화되었다.

#### 1) 인원 및 역종

현재 1만55명(종교이유 복무자 43명 제외)이 대체복무 중인데 이들을 역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역 5천3백95 (이 중 교정역이 1천7백60) / 소방역 1천62 / 사회역 3백67 / 환경보호역 3백91 / 의료역 2백42 / 교육복무역 2천36 / 건설역 2백72 / 사법행정역 1백63 / 토지측량역 62 / 외교역 35 / 경제안전역 30

#### 2) 신체 등급, 훈련 및 복무 기한

신체등급은 현역, 체대역, 면제로 나뉘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체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으로 체대역을 뽑는다. 복무 기한은 현역은 1년 10개월이고 대체복무자 중에서 신체등급상 체대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지만 자원에 의해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개월이 긴 2년 2개월이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8주간의 역종별 훈련을 받는다. 종교적 이유로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주간의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년 9개월이다.

#### 3) 신분 및 대우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이나 사병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체대역에는 계급은 없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현역처럼 봉급이 오른다. 처음에는 이등병 월급인 5천5백45 NT\$의 월급을 받고 6개월 후 일등병 수준, 18개월 이후 복무를 마칠 때까지는 상등병 수준인 6천5백95NT\$를 받는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 NT\$가 약 40원이므로 복무연한에 따라 22만원에서 26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다. (즉, 이들의 한 달 급여가 우리나라 사병의 27개월 월급 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 4. 대체복무 제도의 성과

#### 1) 사회복지의 확대

타이완에서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경찰역, 소방역 등에 대체복무자들의 절반 가량이 배정되어 사회복지의 확대가 원래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수천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참관단이 방문한 기관 중에서 타이난성 노인의 집의 경우 원장은 지난 몇 년 간 자신이 바라던 인력충원이 대체복무자 10명이 배정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했다. 독일의 경우 동서냉전의 종식과 통일로 인해 국방위협이 줄어들어 징병제 폐지의 여건이 성숙하였으나, 아직 징병제 폐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약 13만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자들이 사회복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는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우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2)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타이완이나 한국처럼 현역병들이 2년 이상 복무하는 반면 면제자들은 전혀 군대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역과 면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만큼 크다. 이런 불공평성은 군복무자들에게 심각한 불평등의식과 박탈감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의 군가산점 논쟁은 바로 현역복무자들의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또한 현역과 면제 사이의 큰 차이는 기를 쓰고 현역복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의 원인이 된다.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체대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丙種)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을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한 약시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 것이다.

## 3)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 살릴 기회 제공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4) 현역의 생활개선

대체복무 제도는 사회 뿐 아니라 군대에도 도움이 된다. 대체복무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현역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역생활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간다. 군 당국의 입장에서도 자원해서 현역에 입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감소되어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다. 또 군 당

국으로서는 우수한 인력을 대체복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현역들의 근무 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참관단이 국방부나 군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나 군 당국에서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바는 없다고 한다.

## 5)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될 당시 타이완에는 6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실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특사로 풀려나 복역기간에 따라 군복무 면제 또는 대체복무에 편입되었다.

## 6)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

## 5. 대체복무 제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1) 형평성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돈 있고 빼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빠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정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치엔 의원, 천신민 교수 등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제도적 보완에 의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복무 역종 내에서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다. 경찰역, 교정역, 소방역 등의 근무조건은 다른 역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집단생활을 하므로 현역과 마찬가지로 내무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없고,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20-30명 단위의 내무생활의 경우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증대하여

구타, 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 환경보호 업무 등은 업무 자체가 아주 힘이 들어서 기피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교정역, 소방역, 경찰역, 사회역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체복무 제도가 일이 고될 뿐 아니라 복무 기간도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의견이 인터넷, 친구관계 등을 통해 피져 입대 대상자 사이에 대체복무 제도의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대체복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5천명 모집에 9천명이 지원하여 남는 인원은 추첨을 해야 했던 반면, 그 다음 모집에서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반면 교육역 중 학교 경비와 같은 역종은 근무 학교에 따라 할 일이 없는 등 아주 편하여 대체복무 내에서의 근무조건의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현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부유층 자제들이 선호하는 직역이기도 하다. 현역과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역의 복무기한을 역종 별로 다르게 잡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 2) 소방역 · 교정역 · 경찰역 등의 문제

소방서에 대체근무자를 배치한다는 발상은 한국에서도 의무소방대 문제로 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다. 우리 참관단에는 군경순직자 유가족회의 어머니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은 국내에서 의무소방대에 정직된 청년을 배치하는 문제에 반대하신 분들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의무소방대 증설 문제가 홍제동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순직한 직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정직자들을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석태 변호사, 유가족회의 이애련 회장과 최영금 선생 등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소방당국과 역정사 관계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이 화재진화의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소방차 관리, 수질 검사, 상황근무, 구출된 인원의 후송 등 보조업무 만을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참관단의 평가회에서는 이런 법규정만으로는 미흡하고, 아예 대체복무자들의 화재현장 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정역의 경우 우리 참관단이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으나 교정역이 배치된 이후 교도소 당국이 일반근무자의 인원을 감축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체복무에서 ‘대체’는 협역복무를 사회봉사 등 다른 일로 대체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직원을 대체근무 요원으로 대체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체복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일반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들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 받은 각 기관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일반직원을 감원한다면, 이는 대체복무 제도의 참 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정직된 대체복무자들을 일반직 직업 공무원이 해야 할 위험하거나 힘든 일에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

## 3)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문제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한다. 또 사회복지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에는 현재 1천3백~1천4백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백여개 소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民間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사회봉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일들의 실상을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많다. 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직전훈련(職前訓練)의 경우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로 교육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복지시설에 배정된 후에야 노인들의 기저귀를 가는 것, 그들의 말동무가 되고 짜증을 받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일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복무자들은 다른 곳으로의 전출을 원하기도 한다. 대체복무 제도에서 사회역이 확대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대체복무자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6. 대체복무 제도와 군 인권 문제

매일 한두 명씩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타이완의 군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와는 용쟁호투라 해야 할지, 용호상박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난형난제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군대 내의 의문사, 폭력, 구타, 육설 등은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다. 우리 군대는 일본군의 못된 버릇이 남아서 그렇다지만, 타이완 군대는 악명 높은 국부군의 후신이다. 그런 타이완의 군대에서 현재 놀라운 변화가 진행 중이다. 비록 군대 내의 인권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타이완 군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타이완에는 첸피에(陳碧娥)라는 군대 내의 인권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인권운동가가 있다. 이 분은 우리 참관단의 어머니들처럼 군대에 보낸 자식을 잃은 분이다. 그는 자기 본명보다는 아들의 성을 따서 후앙마마(黃媽媽), 즉 황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여느 어머니들처럼 후앙마마 역시 평범한 어머니였다. 아들을 잃기 전까지는 성격으로 보아서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던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군은 한국에서 늘 그러는 것처럼 자살이라고 통보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후앙마마는 발벗고 나선 지 6년. 처음 국방부에 갔을 때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던 후앙마마는 지금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방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병권익보장위원회의 자문위원이다. 후앙마마가 국방부장에 의해 이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1999년 9월, 아직 민진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인 국민당 통치 시절의 일이다.

후앙마마의 군중(軍中)인권촉진회는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군중인권촉진 카드를 나눠준다. 이 카드에는 상관이나 고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다. 이 카드를 잃어버려도 걱정할 것이 없다. 후앙마마의 전화번호는 타이완의 각 부대의 막사에 군현 병대 등 폭행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군의 공식기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한다. 국방부에서는 아예 후앙마마에게 이런 사건 처리를 위한 전용 전화를 설치해 주었다. 타이완에는 현재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1백여명이다. 후앙마마 등의 노력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을 위한 요

양센터가 이미 건립되었고 내년 예산으로 한화 6백억원이 책정되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일선부대에서 후앙마마 등은 큰 벽에 부딪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참관단으로 방문한 한국의 어머니들이 보기에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타이완의 군대는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여 타이완으로 쫓겨 온 국부군(國府軍)이다. 이들과 함께 온 이른바 외성인(外省人)들은 타이완 현지인인 본성인들에게는 점령자였다. 그리고 타이완군은 본토수복을 노리며 타이완 전체를 병참기지로 만들어 물적, 인적 자원을 쥐어짰다. 타이완 군대의 고위 지휘관들은 외성인인 반면, 하급장교, 하사관, 사병들은 본성인들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 즉 점령자들이 피점령자들을 동원하여 군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타이완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탄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점령자들이 본토수복의 허황된 꿈을 버리게 됨에 따라 타이완의 민주화는 가능해졌고, 군 인권문제 개선의 가능성도 보이게 되었다.

후앙마마는 뜻밖에도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즉 이 제도가 돈과 권력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현역 대신 편한 복무를 하게 하고 있을 뿐 군대 내의 인권 개선에 아직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앙마마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군 인권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이론적 기수 역할을 한 첸신민(陳新民) 교수는 대체복무가 확대된다면 군입대 예정자들에게 현역과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군대가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현역으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되고, 군대도 통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구타 등 폭력의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타이완의 군 인권문제 개선에서 당당한 첫 발은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7. 한국에서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제언

### 1) 대체복무 제도 제기의 원인에서 차이점

한국의 경우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란의 초점이었다. 반면 타이완은 이 제도 도입에서 이론적 기수 역할을 한 천신민 교수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증인 문제 때문에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

타이완의 경우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또 정치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타이완의 경우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도 일반적인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역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군사훈련을 받어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타이완의 경우 이 제도가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적 실리 도모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나, 한국의 경우 올 해 초 『한겨레 21』 보도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식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미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의 유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기총 등 보수적 기독교 단체의 반발 때문에 국회 공청회가 무산된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 문제로 촉발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막강한 반대 세력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타이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기독교 세력이 공히 약하고, 또 대체복무제도가 사회복지라는 큰 틀 속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진영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 2) 감군 문제

병영국가였던 타이완에서 정부 당국이 대체복무 제도를 수용한 것은 타이완이 60만에서 45만 이하로 감군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경우 감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1) 섬나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2) 12억 인구의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인구 2천3백만의 타이완이 병력으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없으며, 3) 국방부와 군부 지도자들이 병력수보다는 장비현대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4) 미국이 끊임없이 감군과 국방력 현대화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감군은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으나, 앞으로의 추세는 남북 긴장완화에 따른 감군과 국방비 절감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이다. 또 군 내부, 특히 해군과 공군에는 군 병력 감축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병들의 봉급이 월 평균 1만원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력감축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가 타이완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 현재 매년 20만 이상의 청년들이 군대에 간다는 사실은 한국의 실업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경제관료들이 감군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 3) 수혜자 층에 대한 여론의 전파와 흡입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 집단은 입영당사자인 청년학생들, 대체복무 인원을 배정 받음으로써 활동력과 봉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 등이다. 타이완의 경험은 이들을 설득하고 조직화하여 이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기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추동력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타이완의 정치인들이 초당파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지원하고, 또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여론의 지원 속에서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와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4) 집권 보수세력의 태도

외형상 우리가 먼저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는 정권은 빼앗겼지만 사회의 해게모니는 놓치지 않은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 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타이완의 외성인들은 본토로 돌아갈 꿈이 깨지면서 이 곳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고, 그 과정에서 본지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민주화가 투쟁으로 일관된 것이었다면, 타이완의 민주화에는 투쟁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옛 지배세력의 자기변신이 있었다. 타이완이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화된 나라는 아닐지라도 제일 먼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라는 왕수에평(王雪峰) 의원의 지적에서 그 영광의 절반은 수구반동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자기를 맞추려는 보수세력의 것이 아닐까. 민주화가 필연적인 것을 용인하고, 어떤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구 지배층의 실리적 태도는 이 제도가 국가적 합의와 축복 속에서 시행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5)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한국사회의 유리한 기반

이상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은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기에 불리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유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첫째, 한국은 타이완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이미 대체복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입대적령기의 청년들이 꼭 현역이 아닌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그 인원을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약 5만5천명, 전문연구요원이 약 1만5천명, 공익근무요원이 5만5천명, 공중보건의 1천여명 등으로 거의 13만에 달하며, 여기에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체검사에서 면제자를 줄이고 대체복무 등급을 신설한다면 면제자의 상당 부분을 대체복무로 흡수할 수 있어 군복무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대

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현역 복무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병역비리를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 8. 맺음말

타이완을 다녀 온 참관단 성원들은 이번 타이완 방문이 대단히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참관단 성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지 못한 것을 반성하였다. 참관단 성원들은 우리가 참관하고 온 것을 시민단체 성원들과 공유하고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의 확산을 위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갖기로 하였다. 특히 이 보고회를 계기로 기존의 비공식적인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새로운 공대위의 구성을 위해서는 영향력과 규모가 큰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키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학생 단체들과 대학 학생회들과 공동사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단체 및 환경단체들을 향해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선전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문제가 대체복무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시발점이 되었지만,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보편적인 인권과 사회복지의 확대 및 불평등을 놓고 있는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많은 집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할 수 있는 집단들, 예컨대 군부와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대체복무 제도가 완벽한 제도일수는 없으나, 병역비리,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투옥, 극히 낮은 사회복지 수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시작이며, 이 제도가 한국사회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사회복지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군축과 개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고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 제8장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sup>44)</sup>

한해 평균 3백여명의 건강했던 아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애인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20년 넘게 낳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면서 훌륭한 장정으로 키워 보낸 군대에서 자식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 지금, 군에 입대하여 작업 중에, 훈련 중에, 그리고 부대 생활 중에 과실이나 구타 등으로 인해 자식을 잃게 되는 그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생각해 보라.

자식 잃는 고통보다 더한 상처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설령 내가 먼저 죽는다 해도 자식이 살수 있다면 기꺼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 부모의 일반적 심정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군에서 어떻게 자식을 잃게 된 것인지 그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소위 ‘군의문사 유가족’들이다. 자식이 죽은 것도 원통한데 그 사망의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모두 제 자식이 못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한 것이라는 군 현병대의 매도 앞에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유가족들이 매년 1백여 가족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평균 3백여 명이 사망한다는 군 사망 사건 중 약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유 없는 자살이 있을 수 있느냐?”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군 수사기관의 일방적 수사 결론에 대해 깊은 불신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진실이다.

### 1. 내 아들의 죽음을 밝혀 달라

98년 12월초, 김 훈 중위 자·타살 의혹이 세상에 불거지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의문사 피해 가족들이 “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일어

44) 이 글은 고상만, 2003『나가 뭔데』청어출판 pp197-220를 읽긴 것입니다.

섰다. 당시 김 훈 중위 사망사건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인권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들 군의문사의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와 방문이 폭주했다. 그러나 사실 김 훈 중위 사건 하나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업무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또 김 훈 중위 사건을 통해 군 의문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 상황에서 하루에도 10여건, 많게는 20여건 이상 몰려오는 군 의문사 피해자 가족들의 문의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애가 타는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울산에서, 목포에서 새벽 차를 타고 무작정 명동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오는 그 나이든 분들의 사연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고심 끝에 우리는 일단 사례를 접수한 후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데까지 해보자며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받기 시작한 군 의문사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은 집중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지 약 한달여 기간 동안 수백 건에 이르렀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나에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저 인권단체의 정체성을 가졌다든 이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이 일을 통해 나는 그 많은 사연들 앞에서 내내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연도 다양했다. 현역병을 비롯해 방위병에서 공익요원, 의경까지. 그리고 훈련병에서부터 위관급 장교인 대위까지, 무려 26년 전인 73년 발생한 사건부터 불과 1달 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정말 다양한 죽음의 사연들이 접수됐다. 하지만 찾아온 가족들은 대부분 명확하게 타살임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다.

지금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지만, 98년 12월 김 훈 중위 사건이 알려지기 전만해도 군대 사망사건은 그저 ‘묻히는 사건’이었다. 그것이 어떤 죽음이건 군 당국은 유족의 위로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 먼저 장례부터 치르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자고 가족들을 압박하고 때로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이 조속한 장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사망한 사병의 가족이나 친척이 공무원이나 군인일 경우 그를 회유하여 장례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협조

를 요구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대로부터 걸려온 한 통에 전화에 정신 없이 달려가서 아들을 읽고 돌아왔다. 인가도 보이지 않는 어느 전방 부대에서 허름한 영안실을 지키다 돌아오는 그 허망한 가족들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하지만 나는 그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자식을 읽은 그 기막힌 심정을 토로하며 끝내는 울음바다로 변해 버리는 그 늙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그들이 말하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꼼꼼하게 묻고 적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끝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도 있었다.

그중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가 부산에서 찾아온 어떤 모녀의 사연이었다.

## 2. 관광버스로 싣고 나온 우리 아들

98년 12월 말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에서 올라온 초로의 한 어머니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딸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시집간 딸이 모시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되든 안 되든 이곳에 민원이라도 제출하여 어머니의 한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아들은 그 집에 3대 독자였다.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어머니는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한 군 생활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한다.

훈련소에서 면회할 때만해도 그 어린 아들이 늠름하고 장하게 생활하여 기특한 마음으로 첫 휴가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부대로부터 새벽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아들이 좀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말에 어머니는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부산에서 택시를 대절하여 강원도 첨첩 산골의 모 군 병원으로 가면서도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그저 좀 다쳤겠지’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육감은 사실이었다. 아들은 좀 다친 것이 아니라 이미 숨이 끊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병대 수사관은 아들이 군복무 염증에 의해 스스로 총을 쏴 자살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지를 아낀 만큼 그 놈이 얼마나 이 어미를 사랑했던 놈인데, 그 놈이 군 생활이 힘들다고 이렇게 나를 떠날 리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한 후 어머니는 실신했다고 한다.

“가보니 처참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대 측이 무조건 자살이라고 하면서 빨리 화장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을 믿을 수 없어 제가 부대에 아들이 죽은 현장이 어디인지 좀 보여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하는 말이 ‘봐야 뭐하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근무한 소대원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어서 자식이나 데리고 가라는데……. 그래, 결국 화장터로 가려했지만 이번에는 부대에서 제 아들 시신을 싣고 나올 차도 내주지 않더라고요. 어찌어찌 해서 겨우 관광버스를 불러 그놈을 싣고 나오는데 그렇게 서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관광버스라도 불러 자식을 데리고 나왔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이 나라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어요.”

끊길 듯 끊길 듯 그때의 아픔을 끄집어 말하는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아들을 강원도 첨첩산중에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다. 어머니의 설명을 들은 후 나는 그 당시 느낀 의문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사건 현장도, 그리고 함께 근무한 소대원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점이 이상했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리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아들이 왜 자살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그때 느낀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을 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설명을 들으며 나는 어떤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나에게 물었다.

“저, 만약에 동생 일을 여기에 진정하면 저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곳에 도 얼굴이 나가게 되나요?”

나는 뜬금 없는 질문에 적이 당황했다. 어떤 뜻으로 묻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분이 무슨 방송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런 철없는 말을 하는 것인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언론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왜 그러시죠?”

머뭇거리던 누나는 그제야 자신의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누나는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 막 5개월 된 아들을 두었다고 말했다. 매일 언론에서 방송되는 김 훈 중위 사건을 보며 죽은 아들 생각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이곳에 민원이라도 접수하라는 마음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한 그 날 밤. 누나는 밤새 한 숨도 자지 못했다고 한다. 옆에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남편은 자신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 결혼하기 전 군에서 숨진 남동생이 있었다는 말을 그녀는 남편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밤새 뒤틀이면서 고민을 했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겁이나서 결국 말을 못하고 왔어요. 군에서 자살한 동생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시부모님이 알게 되면 또 어떻게 하나. 제가 겁이 나는 것은 사실 제 5개월 된 아들 때문인데요.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아들이 자라면서 뭐가 잘못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커서 군에 갔다가 다치거나 하면 시댁에서 자살한 외삼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정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구요…(울음) 동생을 생각하면 방송이고 뭐고 누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댁 식구들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뒷일이 무섭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누나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동생은 또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까 하고 해서 괴롭고…”

결국 그녀는 말도 끝내지 못한 채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자살한 남동생을 두었다는 사실이 시댁에 흠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심정과 한편으로는 비명에 죽어간 남동생과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그녀가 울음을 참지 못해 사무실을 나가버린 후 어머니도, 나도 더 이상 어떤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떨어뜨린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어머니는 “진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99년 2월 9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그렇게 접수받게 된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민원을 토대로 ‘군 의문사 처리 과정의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과 함께 내가 만난 모녀의 이야기를 사례로 발표하였다. 그 날 나는 발표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할 정도로 엉엉 울고 말았다.

### 3. 군이 ‘처리’하는 군대 사망 사건의 유형

이렇듯 다양한 사건임에도 군 당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과정은 몇 가지 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다.

첫째는 자살 동기였다.

군 수사 당국은 자살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정확한 자살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내성적 성격에 의한 군복무 염증 자살’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한편 이유는 모르지만 자살이 확실하다며 제기하는 증거도 극히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98년 9월경 발생한 의정부 모 부대 소속 손철호 소위 수류탄 사망 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수사 결과 자살이라고 발표하여 유가족이 반발하자 군 수사 당국은 자살의 증거로 “사망 전날 연병장에서 손 소위가 부대 벽에 돌 던지는 것을 봤다는 사병의 진술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손 소위가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것이 자살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까.

현병대는 그렇다면 왜 멀쩡한 벽에 돌을 던졌겠냐고 반문한다. 또한 타살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없거나 타살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없어 자살이 맞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처럼 자, 타살의 근거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보하지도 못

하는 상태에서 군 수사기관이 내리는 예단에 의한 자살 결론은 유족의 상처를 더 옥 깊게 만들며 더불어 군 수사에 대한 신뢰 역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타살 가능성보다는 자살의 정황만을 모으는 식의 수사를 한다는 유가족들의 불신이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내가 맡았던 사건은 80년 말 모 대학 총학생회에서 학심 간부로 활동하던 중 군에 입대한 남현진이라는 운동권 학생이 자대 배치 10일 만에 목맨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당시 유가족과 동료 학생들은 남 이병이 학생운동 전력으로 보안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부대에서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어떤 시달림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는 당시 헌병대 수사가 매우 부실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헌병 수사관 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군대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유족들의 입장에서 타살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 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그 4명의 수사관중 한 명에게 내가 물었다.

“수사관께서 지금까지 처리한 사망 사건이 모두 얼마나 되나요?”

그는 약 50여건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럼 그 사건 중에서 사인이 타살로 밝혀지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은 있었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자살이었다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군에 입대한 신병을 상대로 단 한번의 구타나 가혹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을만한 주장인가.

그러자 그는 “소원 수리도 해보고 개별적으로 조사도 해 봤지만 맞았다는 사병도 없고 때렸다는 사병도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시 내가 물었다.

“그럼 수사관께서도 정말 부대 내에 구타가 없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목소리 톤을 낮추며 실토했다.

“사실 지금도 부대에 구타가 있는데 당시 구타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수사결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조작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진술이 없었다고 헌병대 수사관들은 주장할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남 이병의 동기사병들은 헌병대 수사 전에 이미 부대 고참으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은 상태였다.

“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나중에 다 알게된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로 인해 구타 등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의혹은 있다. 정말 헌병대 수사관들은 이 같은 군대내 관행을 정말 몰랐을까. 고참이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해 은폐하도록 하급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몰랐다는 것은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조사를 받았던 숨진 남 이병의 동기 중 허 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이 같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수사관에게 수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진술을 수사관이 묵살하는 것을 보면 헌병대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판단,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헌병대가 진술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헌병대가 사건을 자살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군 수사기관이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문제가 있던 사병이 나약해서 자살했다”는 식의 결론은 억울한 죽음을 두 번 왜곡하는 일이다. 있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드러내야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

셋째는 초동 수사 미진과 현장 및 증거의 고의적 훼손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보존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군대는 이 같은 기본적인 수칙에 대해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현장 보존은 고사하고

아예 사망자가 입고 있던 군복은 빨아버리고 사망 장소는 서둘러 깔끔하게 청소하기도 한다.

원주 11통신여단 모 부대 소속 한근수 이병 사망 사건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98년 12월 30일 당시 한근수 이병은 부대 내 지상 4미터 초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소대 정 모 일병과 함께 초소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현병대 발표에 의하면 당시 한 이병은 근무 교대 시간보다 약 5분 정도 늦게 도착했고 정 모 일병은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고생하는 것이다.”라며 한 이병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45분 후 쯤 정 모 일병의 주장에 의하면 갑자기 바닥으로 총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한 이병은 약 1.6미터 난간위로 올라선 상태였으며 “야!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한 후 스쿠버ダイ빙하듯이 4미터 난간 아래로 뛰어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 후 한 이병은 뇌사에 빠졌으며 3일 후 결국 사망했다.

군 수사당국은 한근수 이병이 고참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후 그 울분에 난간위로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져 투신, 사망한 것으로 수사 종결했다. 하지만 의혹은 있었다. 가장 큰 의문은 정 모 일병의 사건 발생 직후 행동이었다. 정 모 일병은 한 이병이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떨어진 후 초소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부대 사령에게 상황만 알린 후 적어도 부대 사령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10여분 동안 초소 밑으로 내려와 한 이병을 살피는 등의 기본적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생각해 보라. 눈앞에서 전우가 떨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아닌가. 유족이 의문을 가진 것은 또 있었다. 그것은 정 모 일병이 목격했다는 한 이병의 마지막 모습은 사실상 불가능한 자세였다는 점이었다. 정 모 일병은 한 이병과 등을 진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바닥에 총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을 때, 이미 한 이병이 1.6미터 난간 위에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문은 그 난간에 있었다. 약 1.6미터 높이의 외다리 난간에 올라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손은 벽을 짚고 있어야 가능했다. 그런 상태에서 야전 상의와 총을 연결해 놓은 안전 고리 두 개를 해체해야 하는데 사병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손만으로는 그 안전 고리를 해체할 수 없다고 했

다. 그런데도 이런 유족의 의문은 전혀 해명되지 않은 채 사건은 자살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의문 외에도 소속 부대는 한 이병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목도리를 모두 빨아버렸다. 부대 관계자는 목도리의 경우 개인 지급품이 아니라 공용물이라서 다른 사병의 사용을 위해 세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순진하게 해석한다면 증거 보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의적인 증거 인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런 잘못된 행태가 군 의문사를 스스로 유발하는 동력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외에도 98년 12월 초 발생한 이승원 일병 사망사건에서도 군은 현장 보존 및 증거 물품에 대해 보존하지 않았다. 사망 소식을 듣고 부대로 갔을 때 유족은 시신이 안치된 내무반에서 발 디딜 틈도 없이 흥건한 피를 보았는데 정작 아들이 총기로 자살했다는 현장에는 아무런 짓자국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유족은 아들이 사고 당시 입었던 군복을 보여 달라고 하자 군부대 측은 깨끗한 옷에 구멍이 뚫린 군복을 내줬다. 사건 발생 후 옷을 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불성실한 수사는 억울한 죽음을 양산할 수 있는 직무 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는 유족에 대한 군 당국의 박대와 비협조를 들 수 있다. 특히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위해 누구처럼 회피하지 않고 군대에 보냈던 자식이 그 후 처참한 몰골로 돌아 왔을 때 당하게되는 군부대의 박대와 비협조는 유가족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원망과 고통으로 남는다고 말한다.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군사 기밀지역이라며 거부하고 군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소대원 면담이나 심지어 부대 출입조차 꺼린다면 그것이 어찌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같은 군 당국의 박대와 사건의 알고자하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비협조하는 기조에는 군이 가진 근본적인 반인권 의식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유가족을 골치 아픈 존재라고 여기고 그들의 요구를 마치 생떼를 쓰는

아이들의 투정쯤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서 ‘인권 군대’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60만 대군이 있는데 그중 잘못된 단 한 명의 문제 사병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더 군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식의 발상으로는 절대 지금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없음을 군 수뇌부는 자각해야 한다. 보라. 지금 군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가를. 최근 김 훈 중위 사건에 이어 재차 특조단을 구성하여 조사 발표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군의 발표에 대해 도대체 국민 중 얼마나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말이다.

다섯째는 유족의 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

96년 7월 발생한 김 모 상병 의사 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은 악몽처럼 그 일을 떠올린다. 사건을 맡은 모 군단 현병대는 김 상병이 강가에서 휴식 중 수영 미숙으로 인해 익사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병들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김 상병이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소대의 병장과 회식 안주를 마련하고자 물고기를 잡던 중 의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망 경위에 대해 해당 현병대 수사관들은 시종 일관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유족은 장례 후 소속 부대 연대장에게 전화해서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대장은 유족에게 벌컥 화를 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이에 유가족이 “답변을 듣기 위해 정부에 탄원서라도 내겠다.”고 말하자 연대장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연대장의 그 자신 있는 ‘횡포’는 이유가 있었다. 유족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진정서는 다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현병대로 이첩되어 돌아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유가족이 알게 된 것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난 얼마 후였다. 그전 군단 현병대로부터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유족에게 찾아오라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진정서를 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잔뜩 기대를 하고 찾아간 그곳에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모와 모

멸감을 당했다고 한다.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끼고 살던지, 아니면 외국으로 보내 버렸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군대에 보내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같이 죽은 다른 병장 집은 아무 말도 없는데 왜 유독 당신들만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수사 책임자는 호통과 함께 빙정거렸다고 했다.

도대체 이것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에게 군이 할 짓인가.

그것이 힘없는 유족에게 조국이 돌려준 보답일 수 있는가.

#### 4. 군 수사 방식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열거한 사례는 많은 유족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일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군 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군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의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민원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사건 발생 직후 수사에 채 착수하기도 전에 자살로 예단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물론 군 수사기관은 과거에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군 사망사건의 피해 유족은 여전히 현병대 수사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며 군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군대내 사망 의혹사건에 대해 현병대 등 군 수사기관이 사건의 해결을 자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수사관을 포함하는 민간과 경찰, 검찰 등 다양한 종립적인 조사관들이 참여하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은 현행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군 사망 사건만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용한다던가 아니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사망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유족이 첨첨 산골의 군부대까지 매번 찾아가지 않고

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민원 사항을 보다 차분하게 제기할 수 있어 자식을 잊은 유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배려와 합리적인 조사 기구의 창설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둘째,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유족의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보다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 기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현재의 시스템은 그 진정서를 다시 1차 수사를 담당했던 해당 현병대로 보내어 처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유족들은 끝없는 이 빵빵이 놀음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문제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1차 수사기관의 결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어 다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데 이를 다시 그 원래의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진정서가 처리될 뿐 본래 취지인 철저한 재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자신들이 수사하여 발표한 결과를 유족들의 진정에 의해 자기 스스로 다시 부정하라는 것은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본래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현행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급 기관의 수사기관에서 유족이 제기하는 의혹을 중심으로 다시 수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는 1차 수사를 군 현병대가 맡되 그 결과에 대해 의혹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다른 국가 조사 기구가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셋째,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모든 수사와 부검 등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군 부검의 등은 유족들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성의껏 제공하여야 한다. 유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군부대 측은 그저 빨리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욕심으로 자식의 죽음 앞에 경황이 없는 유가족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장례를 요구한다. 더구나 매장을 하고자 하는 유족에게 조차 군 당국은 화장을 하라며 강요하기도 했다. 이 경우 사건의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장례를 할 수 없다며 유족이 버티면 군부대 측은 장례 후에도 철저히 협조하며 유족이 원하는 대로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례까지 끝난 마당에 왜 자꾸 부대를 찾아와 괴롭히느냐.”

라는 헐난과 함께 군부대 관계자와의 면담조차 쉽지 않은 처지가 되어 버린 유족의 경우도 있었다. 김훈 중위 사건 이후 일부 개선되어 현재는 유족도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군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유족들이 이중, 삼중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유족이 원한다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해 군 현병대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자료의 공개는 자식을 국가에 바친 유족에게 국가가 해 주어야 할 당연한 예우이다. 간단한 해명서 한 장만으로 가족의 자살을, 죽음을 인정하라는 현재의 그릇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군대 사망자에 대한 예우 문제이다.

현재 군은 자살로 처리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추모 행사도 하지 않는다. 옥같이 키워 군에 보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고 이어 3일간의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장례를 치른 후 유족들은 깊은 병을 앓는다. 혹여 자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애 태우면서도 해결해 줄 힘이 없는 못난 부모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속병을 앓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군대가 좀더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인권 의식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인의 규명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자살로 최종 판정될지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견디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이들에 대해 국가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립묘지 안장을 비롯한 군대 희생자 추모비 건립, 위령소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식을 잊은 유족이 언제든 찾아가 위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안전하게 다시 아들을 그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군대가 결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설령 전시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휘관의 사명이라면 전시 상황이 아닌 지금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대 관리 잘못으로 빚어진 사병들의 죽음을 개인의 무한한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어찌 하지 않을 수 있으랴.

## 5.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2002년 5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나는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들의 진상규명을 맡은 조사 3과에 배치되었다.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우리 군의 수사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분이 치솟았다. 그렇지 않다고 국방부는 강변하고 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 지금과 같은 군 당국의 행태라면 내 아들을 군에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만난 군의문사 가족들의 사연이 결코 그분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싶다.

김훈 중위 사건이나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타살로 발표되었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군 당국의 사망사건 처리는 진실을 밝히기 보다 그 진실을 감출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감추고 보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군 수사관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만난 일부 현병대 수사관의 경우 ‘수사 전문가’ 보다는 ‘자살 종결 전문가’에 더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기록을 보여 달라는 요청도, 사건 현장을 보여 달라는 요구도, 소대원과 만나 자식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듣고 싶다는 말에도 그들은 “만나봐야 뭐하냐.”며 거부하고, 사건 현장은 군사 기밀이라며 거절했다. 그저 장례나 빨리 치르라고 유족들을 몰아세웠다.

군 수사관은 자신은 유족편이라고 하면서도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답변은 뒷전인 채, 여자와 헤어진 적이 있는지, 가정 내 불화나 또는 성격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만약 이때 부모가 이혼이라도 했다면, 집이 좀 가

난하다면, 하다 못해 결핵이나 허리디스크만 있어도 사망원인은 바로 ‘비관 자살’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다. 법의학자들은 이유 없는 자살은 없다고 한다. 내성적 성격을 가진 사병은 그렇다면 다 자살한다는 것인가. 군의 속성상 각종 암기사항과 군기를 앞세운 구타와 가혹행위가 횡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는 국방부가 그 사실은 밝혀내지 않은 채 그저 죽은 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99년 1월 경.

국방부 육군회관으로 들어가는 후문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있었다. ‘비전투 손실 예방의 달’이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보며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의아스러웠다. 나중에야 나는 그 뜻이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사망한 병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말 어의가 없었다. 사람의 목숨을 ‘손실’로 처리하는 국방부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국방부가 사람의 목숨을 무슨 기계부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국방부가 사람의 목숨을 단순히 ‘손실’로 생각하고, 그래서 부족해진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우고 가르친 건강한 아들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하에 뽑아 가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 6. ‘아름다운 국민의 의무’와 ‘아름다운 국가의 의무’

이 같은 군내 사망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는 더 이상 국방부 혼자만 사건을 해결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족이 추천하는 대리인이 수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유족들이 제기해온 의혹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하지 못한 수사가 결국 군대 사망사건을 의문사로 만들고 그 의문사한 아들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극약을 마시고, 강물로 투신하며, 끝내는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한 자랑스러운 아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나약하고 소심해서 자살해 버린 못난 아들로 돌려주는 지금의 이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에게 무조건 ‘국민의 의무’만 이행하라는 요구하는 것은 민

주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자살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 있는 죽음’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을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려보내 주지 못한 국가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에게 추모와 최소한의 예우가 되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힘있는 자들 다 빠져나간다는 ‘아름다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머리 빡빡 깎고 입대한 후 그 원인도 밝혀지지 못한 채 숨겨간 이 땅의 힘없고, 뼈 없고, 권력 없는 이름 없는 우리 형제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아름다운 국가의 의무’를 확인 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군의문사 실태와 군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

## 제2부

### 주요 기획 기사

## 제1장 못난 나라에 태어나 두 번 죽은 아들아

(1999. 5. 25, 시사저널 제500호)

자식을 군에서 잃고 소복을 입은 채 전국 각지를 누비는 어머니들이 있다. 이들을 실은 전세버스 창가에는 살아 생전 늘 했던 젊은이들의 영정이 줄지어 걸려 있고, 바깥에는 ‘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구호가 적힌 빛 바랜 플래카드가 펼려인다. 벌써 2개월 째다.

이 버스는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간다. 10년 전에, 또는 수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군부대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사망 통지를 받은 이 어머니들에게 이제 군대에서 사망한 병사는 모두 ‘내 자식’이다.

지난 5월 10일 소복을 입은 군대 의문사 유족 50여 명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 ○○부대 정문 앞에 나타났다. 4월 24일 중대장 지시로 장병 학술평가 대리시험을 보다가 적발되어 감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의문사한 이 부대 장승완 상병의 사인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부대측은 서둘러 정문을 폐쇄했다. 장상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대 철제 정문을 타고 넘어갔고, 이내 정문을 지키던 일단의 무장 군인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왔다. 부대측과 군대 의문사 유족 사이의 이같은 실랑이는 벌써 1주일 째다.

풀리지 않은 군대 의문사 1백20여 건 이를 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이 버스가 서울로 올라온 틈을 타서, 이들이 충주의료원에 안치한 채 지키고 있던 장상병의 시신은 공군측에 의해 국군 원주병원으로 옮겨진 뒤 강제 부검 절차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상경 유족들은 버스를 청와대 앞길로 돌렸다. 그러나 종로경찰서 순찰차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버스를 가로막았다. 소복을 입은 어머니들은 이내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같은 시각 천용택 국방부장관은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강연회에 초대되어 ‘강군을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었다.

돈을 써서라도 내 자식은 병역을 면제하려고 기를 쓰는 일부 어머니의 잘못된 사고 방식이 군대를 불신의 높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올해 5월 국방 당국이 홍역을 치르는 문제는 결국 ‘군대와 어머니’로 압축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어머니의 잘못에 대해 국방 당국은 드러내놓고 비난하지만 또 다른 어머니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뚜렷이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 당국을 국민적 불신의 높으로 몰아넣은 군대 의문사(사망 사고) 처리 문제이다.

지난해 12월 판문점 경비 소대장 김 훈 중위 의문사 사건이 폭발하면서 여론의 눈길을 끌게 된 군대 의문사 문제는 현재 국방당국이 떠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이다.

국방부는 김 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80년대 이후 군대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 당국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지켜본 유족들은 군 당국이 사건 재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내세우며 현재 국방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과정에는 김 훈 중위 사망사건을 또다시 자살로 몰아붙인 국방 당국의 군사작전식 사건 처리 태도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기존 수사팀의 잘못으로 줄속 처리된 사건을 또다시 군 당국 손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고 있는 군대 의문사는 현재 1백20여 건. 한 해 장교와 사병 4백여 명이 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데, 그 중에서 군 당국의 자살 발표를 납득하지 못해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의 개략적 수치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군대 의문사 사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80년대 군사 독재 치하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된 뒤 이른바 녹화사업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병사들이다.

20여 명에 달하는 강제 징집 회생자들은 사건 직후 유족에게 모두 자살로 통보되었다. 80년대 강제 징집 의문사 유족들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 협·회장 이한열 씨 어머니 배은심)로 뭉쳐서 국회 앞에서 2백여 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다른 한 그룹은 수적 다수를 이루는 군대내 일반 의문사 회생자들이다. 이들 유족은 장교와 사병 가릴 것 없이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회장 이혜숙)로 뭉쳐 진상 규명 활동을 한다. 김 훈 중위 의문사가 공론화하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7일 결성된 전군협은 현재 각 군부대를 순회하며 버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군협 회원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각종 군대 의문사 진상규명 행사를 갖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국방부 앞에서 소복 시위를 벌임으로써 군대 의문사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했다. 강제 징집 의문사든 일반 의문사든 이들 유족이 겪는 공통점은 군 당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자살’ 통보를 보낸 뒤 가정이 풍비박산 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고통은 건장한 자식이 군에서 사망했다는 충격에서만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국가기관인 군부대의 설명을 믿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수두룩하고, 이를 근거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 어김없이 모욕과 멸시와 천대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성역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84년 학생운동 전력이 문제가 되어 강제 징집되었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들의 사인을 규명하고자 16년째 상경해 투쟁하는 허영춘씨(63)는 이렇게 말한다.

“내 아들 원근이가 스스로 M16 소총 세 발을 쏘아서 자살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통보였다.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에 쏘았다가 안 죽으니까 왼쪽 가슴에 다시 쏘아보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머리에 다시 한 발을 쏘아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살이 있다고 강변한다면 전세계 사람들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런데 군 당국은 지금도 이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에서 농사를 짓는 허씨는 이같은 군 당국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을 오가며 백방으로 뛰기를 16년째. 현재 유가협 지부장을 맡고 있는 허씨는 아직도 국회 앞에서 2백여 일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아들 뿐 아니라 강제징집되었다가 의문사한 다른 20여 학생의 사연을 알게되었고, 그들의 유족과 함께 자연스레 군대 의문사 해결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다. 16년 간 생업을 뒷전으로 한 채 아들의 사인을 규명코자 뛰는 허씨의 각오는 단 한 가지이다. 못난 나라에서 나서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간 아들 앞에 못난 아비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 진상 규명 요구하다 아들 따라 죽은 어머니

80년대 강제 징집 희생자 유족 가운데는 고통과 한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끝내 스스로 아들의 뒤를 따라간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강제 징집 직후인 87년 9월 군부대에서 불에 태워진 시신으로 돌아온 최우혁씨의 어머니가 그런 경우이다.

군 당국은 당시 최씨가 분신 자살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수소문한 끝에 그가 이미 사망한 뒤 불에 태워졌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여러 군데서 포착했다. 이를 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군 당국은 냉대와 협박으로 대할 뿐이었다.

결국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최씨 어머니는 89년 아들의 뒤를 따라가겠다며 한강에 투신해 자살했다. 학생운동을 하던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한다고 설득하던 군 당국의 주문을 자기가 수용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몰고 온 비극이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들과 아내를 함께 잊은 최봉규씨는 죽는 날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현재 유가협 총무를 맡아 농성을 이끌고 있다. 일반 의문사 유족들이 겪는 고통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아들의 자살 통보를 받은 유족들은 대부분 속 시원한 사망 원인이나 알고자 군 당국의 문턱을 넘었다가 가슴에 두 번 못질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 한다. 이들은 자연히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군 당국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사건을 수소문한다. 그러다가 갈수록 석연치 않은 군부대와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생업까지 뒷전으로 미룬 채 혐난하고 기약 없는 진상 규명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 국방부 “자위하다 죽었으니 자살이다” 우겨

현재 전국 각지의 사고 군부대를 버스로 돌며 소복 시위를 벌이는 군대 의문사 유족들은 여러 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합숙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12일 안동에 있는 50사단에서 의문사한 육군 박도진 중위(학군 35기)의 어머니는 전군협 소복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절규한다. “학군 35기 동기회 부회장으로 동기생 사이에서도 촉망받던 내 아들이 자위 행위를 하다가 질식해서 사망했고, 사망 원인이 본인 중과실이니 자살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었다. 부대에서는 처음에는 순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자 상부에서 거부한다면 유해를 화장해서 가져가라고 통보했다. 부모가 못난 죄로 대한민국의 건장한 장교 아들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두 번 죽인 꼴이 되고 보니 내가 밤이면 실성해 거리를 나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군 당국의 태도에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서 뒤늦게 부대 관계자 및 전역자들을 상대로 수소문한 결과 아들이 타살된 후 교묘히 질식사로 위장된 의혹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박 중위의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지만 기필코 진상을 규명하고야 말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상 규명에 뛰어든 부모 가운데는 천신만고 끝에 부대측이 감추고 있던 결정적 증거를 잡아내는 경우도 있다. 전군협 회장 이혜숙씨가 그렇다.

이씨는 6사단에서 복무하던 아들 박현우 일병을 지난해 7월 20일 잃었다. 부대 안에서 전기에 감전되어 숨진 박일병의 사인에 대해 군부대측은 처음에 자살 또는 본인 중과실에 의한 사고사로 처리할 태세였다. 그러나 이씨는 부대를 상대로 3일 동안 치열한 싸움을 벌여 사건 은폐 기도를 막아내고, 살해범을 잡아냈다.

지난해 10월 12일 외박 공문을 결재하지 않는다 하여 앙심을 품은 부하 하사관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육군 1사단 오정석 중위 아버지 오재균씨도 스스로 뛰어 진상을 밝혀낸 경우이다.

경남 합천에서 식당업을 하던 오씨는 생업을 팽개친 채 5개월 동안 부대 문

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전역자들을 상대로 수소문해 군 부대측과 수사기관이 알고서도 숨겼던 살해 현장 목격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시사저널』 제496호 참조).

### 군 당국의 재조사로는 진상을 규명 어려워

그러나 대다수 의문사 사건에서 유족이 밭로 뛰어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기만큼 힘들다.

사고가 난 군부대측과 초동에 자살로 결론을 낸 군 수사대의 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철저히 외면한 의혹 사항들을 파고들어 타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를 들이대더라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법이 없다.

김 훈 중위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김중위 사건을 다시 자살로 발표한 특조단이 조사 초기에 매달린 작업은 ‘유족측이 혹시 결정적 물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몇 차례 유족인 김 척 예비역 장군을 만난 특조단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될 무렵 단호히 관계를 단절하고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했다.

그리고 나서 서두른 것은 자살 동기와 징후를 무리하게라도 꿰맞추는 작업이었다. 다행히 김중위 사건은 타살의 결정적 증거로 추정되는 현장 철모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져 현재 인권단체와 국회가 특조단의 자살몰이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군대 의문사 문제를 군 당국이 재조사도록 한 현재의 의문사 처리 방식이 계속되는 한 국방 당국을 향하는 한 맷한 어머니들의 소복 시위 행렬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정희상 기자)

## 제2장 ‘녹화사업’을 용서할 수 있는가

(2002. 7. 24, 『한겨레21』 제419호)

정성희, 한희철,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온순…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들은 전두환 일당이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이후 자행한 이른바 녹화사업에서 희생된 젊은 넋들이 다. 그들이 목숨을 잃은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우리는 아직도 녹화사업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의 소위 수많은 ‘업적(?)’ 가운데 필자같이 박정희를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게 녹화사업이다. 박정희가 벌거벗은 산을 녹화하려 했다면, 전두환 일당은 ‘붉게 물든’ 대학생들의 머릿속을 ‘녹화’하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 그것도 강제징집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악랄한 발상을 통해서.

### 개인적인 ‘씁쓸한’ 기억

녹화사업이란 전두환의 집권 초기에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출신 대학생들을 ‘특별정훈교육’으로 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사가 마련한 계획이다. 이 사업에 따라 강제징집된 사병들에 대한 강압적인 사상개조와 학생운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수사가 자행됐고,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사가 녹화사업 대상자들에 대해 관계 프락치 공작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에게 휴가를 줘서 내보내 과거에 함께 활동한 동료·선후배들의 행적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너 하나쯤 죽어도 안전사고로 보고하면 그만이다”라는 협박 속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며 녹화사업 대상이 된 사병들의 인간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녹화사업에 대하여 ‘씁쓸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필자는 ‘객관적’으로 서술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필자 자신이 녹화사업의 1기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굳이 ‘씁쓸한’이란 말을 쓴 까닭은 너무나 운 좋게 필자는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고,

프락치 공작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녹화사업 대상자라는 같은 운명에 놓였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끝내 살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그분들께 늘 마음의 빛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의 군사반란 아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의문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이들 의문사 사건의 대부분은 국가기관이加害자로 추정되는 사건들인데, 피해자 신분을 보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85건 가운데 군인이 25건으로 가장 많다. 그 중 공식적인 녹화사건 관련자가 모두 6명이다.

1980년대 초반의 녹화사업은 군이 국방의 의무를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프락치 공작을 강요하였다는 점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역사사회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찰스 틸리는 국가의 성립 자체를 조직범죄로 보고 국가의 행동양식을 조직범죄와 견주기도 했지만, 녹화사업은 그런 국가폭력이나 국가 범죄 가운데서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것이었다. 녹화사업과 강제징집은 단순히 보안사만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교부, 병무청, 국방부, 육·해군본부, 검찰 등 정부의 여러 부서가 간여한 종합적인 범죄행위였다.

### 박정희 정권 때는 그래도 순진했다

아들이, 동생이 감옥에 가는 대신 군에 간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 등록금까지 주지 않고 억지로 군대에 보냈다가 사망통지서를 받은 부모와 형제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비열한 행위가 녹화사업이었다. “군대에 가면 운동권에서 멀어지겠지 하는 생각에 보냈는데, 그게 동생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라고 김두황씨의 형 김두원씨는 말한다. 가족이 사진을 치워버리자 그저 아들 얼굴만 그림으로 그리던 어머니는 곧 아들의 뒤를 따랐다.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집을,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용한 것은 1971년 10월의 교련반대 폐모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박정희 정권은 학원의 군사화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을 경찰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되자 위수령을 발

동하여 대학을 군홧발로 짓밟고, 전국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 핵심인물 170여명을 제적하여 군대로 보내버렸다. 그런데 이들이 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전국의 대학생들끼리 자연히 연결되었고, 그때 맷은 인간관계가 74년 민청학련을 조직할 때 요긴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박정희 시절의 강제징집은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녹화사업처럼 학생운동 출신 사병들을 프락치 공작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는 없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전국의 각 대학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학칙을 개정하여 지도휴학제를 도입했다. 휴학이란 원래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학교당국 – 실제로는 공안당국 – 이 학생들을 강제로 휴학시켜 군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지도휴학 대상이 되어 일부는 군에 끌려가고, 일부는 반유신태모를 주도하여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기도 했다. ‘문제학생’을 강제징집하여 군에 보내는 발상은 뒤의 녹화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전두환이 집권한 80년 당시 학생운동 주역들 가운데 겸거되었다가 석방되거나 6개월 정도의 단기형을 살고 출옥한 사람들은 군대로 보내졌다.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그 해 12월에는 서울대에서 학회들의 연락모임이 적발되어 이른바 ‘무림’ 사건이 일어났고, 이듬해 초에는 부산대에서 ‘부림’ 사건, 그리고 전국민주학생연합을 결성하려던 시도가 적발되어 ‘학림’ 사건이란 이름이 붙었다. ‘무림’이니 ‘부림’이니 ‘학림’이니 하는 이름은 관련학생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이름 붙인 것인데, 어떤 증언에 따르면 동백림 사건의 ‘림’자를 따서 돌림자로 삼았다고 한다.

### 6대 독자와 소아마비 장애인까지 입영

이 사건 관련자들은 대체로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어 A급은 감옥으로 가고, B급과 C급은 군대에 강제입영되었다. 그리고 81년 12월 5일, 정부는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를 통해 학생운동과 관련된 학생들을 조기입영시키기로 했다.

조직사건이 아니더라도 단순시위에서 겸거된 학생들도 강제입영되기 시작했다. 대학생이 휴학해 학적 변동자가 되어 빠르면 1개월, 늦으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특수학적 변동자’들은 집에서 밥 한끼 먹을 틈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군대로 직행했다.

이때 강제입영된 사람들 가운데는 군대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 필자처럼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안경을 벗으면 기어다닐 정도로 눈이 나빠 이미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받은 선배도 있었고, 습관성 탈골로 면제대상이 분명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6대 독자나 소아마비 장애인까지 군에 끌고갔다고 한다. 이윤성씨는 만 20살이 안 돼 징집연령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60고령인 2대 독자로 시력도 극도로 나빴는데도 군에 강제징집되어 결국 녹화사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월북을 기도하여 보안대에서 조사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쓴 채.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강제징집된 학생들이 제대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시작되었다. 81년 1월에 입대한 무림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교련교육으로 인해 병역단축 6개월을 받은 사람들은 83년 3월 말에 제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두환 일당은 국방의 의무를 악용해 ‘문제학생’들을 학원에서 분리했지만, 학원시위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제 강제징집된 학생들이 줄줄이 학원으로 돌아가게 되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에 보안사는 82년 9월 사령부 대공처에 중령 서의남을 책임자로 하는 5과(심사과)를 신설하고, 그들의 용어로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예방대책’을 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 전두환이 깊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최경조의 증언에 따르면, 보안사 간부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운동권 출신 입대자들이 불온낙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전두환이 “야, 최경조, 너 입마 뭐하는 거야”라고 질책하여 특별 정훈교육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보안사의 특성상, 그리고 보안사령관 출신인 전두환과 보안사의 특수한 관계를 놓고 볼 때 당시 전두환의 이런 발언은 ‘명백한 지시’였다.

80년 이후 군에 강제징집된 학생들의 수는 약 1천1백명으로 추산된다. 군이 정

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실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81년 11월부터 83년 11월 사이의 입대자 4백47명 가운데 82년 9월부터 녹화사업이 외형상 중단되는 84년 11월까지 모두 2백56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통계는 축소된 것으로 무림사건 관련자 등 81년 11월 이전에 입대한 사람들은 빠져 있다.

### 새까만 졸파구에 ‘부탁’ 했다?

88년 12월 5공청문회에서 당시 보안사령관 박준병은 프락치 공작을 일부 시인했다. 그런데 그는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들이 사병들에게 ‘부탁’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발뺌했다. ‘부탁’이라니! 군대에 ‘부탁’이라는 게 있을까. 더구나 서슬 푸른 보안대의 수사관들이 새까만 졸파구에게 ‘부탁’을 하겠는가. 83년 5월에 이윤성, 6월에 김두황, 7월에 한영현, 8월에 최은순이 연달아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겨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목숨을 끊거나 죽음을 당해야 했겠는가.

친구를 팔리는 프락치 공작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병들을 공작정치의 도구로, 아니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던 보안사 요원들의 비열한 인간성 파괴행위였다. 일부는 친구들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다 아는 정보를 물어다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휴가기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다가 귀대하기도 했고,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사실이나 이름을 대주고는 평생을 괴로워해야 했다. 녹화사업은 단순한 정훈교육이 아니었다. 몇몇 비전향 장기수들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강제 전향공작에서도 단순히 전향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전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한다.

동지를 팔아야만,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동지들과 만날 수 없게 되어야만 전향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두환의 보안사는 ‘순화’의 기준을 단지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반인륜적인 수준에서 강요했다. 그리고 일부 보안사 요원들은 학생들을 이용하여 출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프락치 공작을 강요했다. 당시 보안사는 공작예산의 절반 가량을 이 사업에 쏟아 부을 정도로 녹화사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흉흉한 소문으로 떠돌던 프락치 공작과 학우들의 사망소식에 관한 학원괴담은 84년 3월에 제적생과 해직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84년 9월에 '소요 관련 대학생 조기입영제'를 폐지했고, 이어 녹화사업의 전담부서인 보안서 3처5과도 폐쇄했다. 그러나 녹화사업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다. 90년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에서 보듯이 학생운동 관련자들을 이용한 프락치 공작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은 계속되었다. 전 국민이 입대예정자, 군복무자, 전역자이거나 그 가족인 이 땅에서, 누구도 보안사의 촉수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시기에 일어난 의문사를 파헤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다. 이 기관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아들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이 421일이라는 오랜 기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 겨우 얻어낸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출발도 힘들었지만, 그 권한은 너무나 미약했다. 의문사 사건은 모두 군·보안사·안기부·경찰·검찰·교도소 등 힘있는 기관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는 이들 기관을 상대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기껏해야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인데, 그나마 과태료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에 관한 절차도 확실치 않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기에 의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면 몇 달씩 묵히다가 주민등록번호, 당시 주소·본적 등을 한 가지씩 알려주는 식이다. 자료를 요구하면 폐기하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문건명을 적시하라고 한다. 도대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정보기관의 문건명을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떻게 적시할 수 있단 말인가.

### 전두환 자녀들과 비슷한 연배인 희생자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경우 가해자들로부터 참혹한 사건들의 묻힌 진실을 끌어낼 수 있었던 유력한 도구는 사면권이었다. 자신이 알

고 있는 진실 - 자신이 가해자였던 사건까지 포함하여 - 을 말해주는 대가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진술인이 기소되지 않도록 불처벌을 약속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회피해 진실을 사들이는 이 방식을 놓고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01년 4월 한국을 방문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란데라 박사는 처벌을 통한 정의 구현을 바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진실고백을 한 사람을 사면한다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남아공의 악명 높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정책의 앞잡이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불태우거나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 속에 처넣었는지를 들어야 했던 가족들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러나 남아공은 처벌에 앞서 진실을 턱했고, 진실에 근거한 화해를 추구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의문사의 가해자로서 음습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소시효의 완성이란 면죄부를 손에 쥐고 있다.

녹화사업은 단지 의문사 6건의 개별적인 사건 모음이 아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진 지시에 의해 관련기관이 총동원되어 자행된 체계적인 국가 범죄다. 힘없는 민주당과 과거 국가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득시 글거리는 한나라당은 여론에 떠밀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운동을 밖에서 지원할 시민사회의 일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녹화사업으로 의문사한 정성희씨는 일기에서 언론이 제 구실을 못 할 때 국민은 무기력해진다고 언론을 질타했다. 그 언론들은 의문사를 외면한 것처럼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도 외면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 온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녹화사업의 최고책임자 전두환의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녹화사업의 희생자들은 전두환의 자식들과 비슷한 연배다. 무능한 대통령과 여당, 무책임하고 뻔뻔한 야당, 그리고 무관심한 시민사회의 합작으로 어쩌면 저 녹화사업을 비롯한 의문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 제3장 군의문사, 이제는 끝내라

(2002.9.12 『한겨레21』 통권425호)

### 허 일병 사건 이후 관련민원 30건 폭주

1980년부터 95년까지 15년 동안 군에서 죽은 사람은 자살 3천2백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천9백51명에 이른다(『한겨레』 95년 9월26일자). 이후에도 2000년도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3백여명이 죽고, 이 가운데 1백여명이 자살한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수치를 접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걸프전 당시 미군쪽 사망자가 1백48명, 사고사 1백21명으로 모두 2백69명에 지나지 않은 것에 견준다면 이러한 수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를 통해 밝혀진 허원근 일병 사건의 진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위원회는 “허 일병이 중대 내 소대장의 진급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중대본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뒷바라지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하사관이 우발적으로 쏜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으나 당시 군 현병대는 허 일병이 중대장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유족이 “자살하려는 사람이 3발이나 총을 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을 때 군 현병대와 군 검찰이 유족의 편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진실이 밝혀지는 데 18년의 긴 세월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허 일병 유족은 선택받은 경우

허 일병 사건보도 이후 규명위에는 군의문사 관련민원이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허 일병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들끓는 것은 비단 타살을 자살로 조작하고 은폐한 군의 반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

른바 사회 지도층은 마치 이런 현실을 페뚫어본 것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결국 힘없는 서민의 자식들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가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다른 한편 역설적으로 허 일병의 유족은 운이 좋은 경우다. 사고현장과 목격자, 참고인, 각종 사건 관련증거들이 모두 군내에 있고, 수사기록 열람조차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유족의 힘으로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18년간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은 “죽은 자식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시는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부모의 마음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도 규명위 같은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규명위에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군의문사 유족들과 비교할 때 선택받은 경우라 할 것이다.

군의문사는 무엇보다 폐쇄적인 군조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유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식이 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죽음에 이르게 즉 사망원인과 사망경위 및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자식을 마음 편히 보내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은 뒤로 한 채 ‘타살의 혐의가 없으므로 자살’이라는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더하고,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군대에서 죽는 모든 사건이 군의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유족들이나 인권단체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오히려 타살 또는 사고사의 가능성 있는 사건들이 ‘군의문사’ 사건이다. 즉 죽음의 책임을 군에서 회피하기 위해 사망자와 유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성급히 자살로 결론을 내려 유족들의 분노를 사는 사건들이다.

### 고소당하는 유족들과 사체 가압류

자식의 죽음이 군의문사 사건이 되는 것만으로도 유족들에게 큰 아픔이지만

고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허 일병의 유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유족들은 국가 주요기관에 진상규명을 호소한다. 국회로, 청와대로, 국방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보지만 답변은 사건이 일어난 부대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유족들은 직접 사건현장을 방문해 유족 스스로의 힘으로 진상규명에 나선다.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참고인 등을 만나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부대쪽의 비협조적 태도로 충돌을 빚기도 한다. 지난 3월 초 12사단에서 죽은 반00 일병의 유족은 폭행·공무집행방해로 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지난 7월 23사단에서 죽은 박00 일병의 유족도 무단침입·공무집행방해·통행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유족들이 군으로부터 고소·고발되는 이러한 사태는 유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상급기관의 재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요청하며 재조사시 믿을 수 있는 법의학자의 재부검을 통해 또 다른 증거를 밝힐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거부하기도 한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가족들의 절규에 군에서는 사체인도소송과 가압류라는 법적 절차도 서슴지 않는다.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사체의 보관비용을 가족들이 물라며 유족들을 상대로 국가가 사체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99년 9월 논산훈련소에서 일어난 이00 하사의 유족에 대한 사체인도소송과, 김천의료원에 사체를 보관하고 있는 98년 9월 죽은 해군 2함대 소속 김00 중위의 유족과 99년 12월 죽은 해군 2함대 소속 나00 이병 유족에 대한 사체인도소송과 집·자동차·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유족의 생활기반까지 뒤흔들어 놓는다.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나타난 걸 보는 부모의 심정을 사람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들이 둘이 경우에도 물론 다르지 않다. 98년 9월 죽은 해군 2함대 소속 김00 중위의 동생은 지난해 8월 군에 입대했다. 지난해 11월 5군단에서 죽은 강00 하사의 동생도 현재 군복무 중이다. 그리고 둘째아들의 군 입대를 앞둔 유족들의 마음

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일 둘째마저 형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 단 한건의 성과도 없는 국방부 특조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죽음과 국가와 군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몸서리친 유족들은 지친 육신으로 병마와 싸워야 한다. 어머니와 누이가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고 폐암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을 감당해야 한다. 지난 90년 21사단에서 죽은 홍00 이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2달만에 병원에 입원해 1년6개월 동안 폐암과 싸우다 죽었고, 지난해 3월 12사단에서 죽은 김00 이병의 아버지도 지난 6월 아들의 장례를 1년3개월만에 치른 뒤 사흘 만에 폐암으로 죽었다. 자식의 죽음이 온 가족의 고통과 죽음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인권문제에서 생명권은 매우 중요한 분야다. 하루에 한 명씩 군에서 아까운 생명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일어난 이른바 ‘김 훈 중위 사망사건’이 사회문제화되었을 때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대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민원제기 사망사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99년 4월에 발족해 재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80년 이후 99년 9월 30일까지 일어난 사망사고 가운데 민원이 접수된 사망사고 1백66건에 대한 조사를 2001년 9월까지 재조사했다. 특조단은 △유가족의 고충이해와 국방개혁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유가족 요구수용 △유가족,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자문위원 등의 수사기록 열람 및 현장접근 보장 △유가족 쪽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 재조사에 적극 반영 △유가족이 요구시 자문위원·언론인 등 참가하에 조사설명회 또는 공개토론회 실시라는 약심에 찬 원칙을 밝히며 유족의 편에서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단 1건도 사건의 내용이 바뀐 것은 없었고(타살의혹이 제기된 민원이 많았음에도) 해석상의 차이로 20여건을 순직처리해 유족들에게 생색만 내며, 기

존 수사결과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했다. 더구나 특조단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특조단의 재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사실 특조단에서 밝힌 원칙이 일반 군대 내 사망사고에서 지켜지고 특조단도 원칙대로 재조사를 했으면 군의문사 논쟁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데려갈 땐 국방의무! 죽고 나면 나 몰라라!”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무엇보다 국가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20년간 건강하게 키운 자식을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데려갔으니 죽음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3조 1항)며 한국 남성은 일정 기간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군가협은 각종 집회에서 “데려갈 땐 국방의무! 죽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며 국가와 군을 원망하고 있다. 이는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결론을 내리면 국가는 유족에게 어떠한 예우와 보상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국가유공자등록 및 예우에 관한 법에서는 ‘자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령에도 ‘자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보훈처도 유족에게 사건에 대해 한마디의 설명도 듣지 않고 ‘자해로 인한 사망’ 규정에 의거 비유공자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설령 자살이라도 사망원인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다는 최근 행정소송에서의 잇단 사법부의 판결은 보훈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가협은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타살의 혐의가 없으므로 자살”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사결과 발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대 부적응, 가정환경 비관, 이성문제, 금전문제, 성격문제라는 천편일률적인

자살로 짜 맞춰진 사망원인을 밝히며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군수사기관의 주장처럼 “그렇다면 자살이 아님을 유족이 입증하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사고현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군사시설보호법 7조), 현장에 대한 촬영·묘사를 금지하고(군사시설보호법 8조), 목격자와 참고인에 대한 녹취 및 진술을 금지하고, 모든 관련증거와 수사기록을 군에서 독점한 상태에서 유족이 자살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왜 자살일 수밖에 없는지를 군에서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살이 아니라는 수사결론을 내려야 한다.

### 민·관·군 함께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마지막으로 군가협은 의혹이 제기된 모든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특조단’과 같이 군만으로 구성되는 특별 기구는 반대한다. 허 일병 사건에서 보이듯이 군만으로 구성된 특조단과 같은 기구로는 진실규명을 할 수 없으며 유족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과거 병역비리조사단처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해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01년 국정감사에서 육군본부는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전문가, 유가족이 위임하는 대표가 포함된 육군본부의 상설기구가 직접 사망사고를 수사하도록 육군본부 직속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제 국방부는 군당국에서 국회에서 답변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한점 의혹 없는 재조사를 단행해 유족들을 위로해야 한다.(남상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군의문사 실태와 군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

## 제3부

### 주제별 언론기사

## 제1장 군의문사 실태

### 1. 군의문사 진상규명 민원 쏟아져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정명화(68)씨는 아직 11년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2월 5일 새벽, 막내아들 연관(당시 22)씨가 군에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부대로 찾아간 정씨에게 한 장교는 “고참병한테 가슴을 두 번 맞고 쓰러지면서 관물대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말했지만, 아들의 시신은 온통 멍투성이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정씨는 농사일 대신 진상규명에 나섰다.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제대병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 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정씨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나 청와대에 제기한 정씨의 민원은 소용이 없었다.

수많은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 이후에는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민원제기가 폭증하고 있다. 국방부 민원실과 관련 단체에는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2~3건으로 늘었다. 유가족들은 “군내 사망사건 대부분이 자살로 처리되는 것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84년 숨진 허원근(당시 22)씨의 아버지 영춘(59·전남 진도군 군내리)씨는 터무니없는 사망 경위를 듣고 혼절했다. 사망기록서에는 그 해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모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은 M16으로 왼쪽 가슴을 쏘았는데 죽지 않자 다시 오른쪽 가슴을 쏘았고,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자 이마를 쏘아 자살한 것으로 돼 있었다. 중대장과 고참병한테 심한 꾸중과 폭행을 당한 뒤, 총과 실탄을 훔쳐 자살했다는 것이다. 영춘씨는 양쪽 가슴에 총을 쏘고, 그래도 힘이 남아 머리에까지 총을 쏘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군당국에 항의했다.

87년 5월 11일 가난한 가정 형편을 비관,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박상구(당시 21)씨. 그러나 유족들 앞에 놓인 박씨의 시신에는 목졸린 흔적은 물론, 어깨와

팔에는 칼자국이 선명했다. 유족들은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해 귀와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는데, 무슨 음독자살이냐”고 반문했다. 뒷목 부위에서 K2 자동소총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노철승(당시 23)씨, 군당국이 자살로 발표했다가 안전사고로 사망경위를 정정한 서울대생 송종호(당시 24)씨, 자고 일어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는 박필호(당시 22)씨 등등….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일로 38일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가슴에 묻어놓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1998. 12. 12. 조선일보)

## 2. ‘흔들리는 군’ 졸속 수사가 군 의문사 양산

지난 8월 26일 자정쯤 서부전선 육군 5사단에서는 학군 36기를 갖 임관한 손철호 소위(25)가 전방 철책선 부근에서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 부대원 등 주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군 현병대에 의해 자살이라는 비공식 결론이 내려졌다. 언론에도 자살로 보도됐다.

그는 사고 당시 1주일만 있으면 후방인 의정부로 전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자 친구에게는 전출 직후 받게 되는 휴가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같이 놀러가자고 약속하고, 기차표를 사놓으라는 편지까지 보냈는데 군생활에 염증을 느껴 유서 한장 없이 자폭했다는 군 발표가 말이 되느냐며 유족이 거세게 항의하자, 군현병대는 그제서야 부대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초동수사 부실과 성급한 결론 때문에 결국 국방부의 의문사 민원 리스트에 올랐다.

건장한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가 자살로 사망했다는 쪽지 한장을 받는 가족들로선 그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해 설득해야 가족들도 납득하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실한 군 수사체계로는 이런 유족들의 열망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김 훈 중위 의문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김 중위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측소 올렛에서 사망한 시체로 발견된 것은 지난 2월 24일 낮 12시 20분. 곧이어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당시 판문점 경비대대 러펜버그 대대장(중령)은 현장을 살펴본 뒤 오후 1시쯤 자살로 보인다는 짧막한 한마디 평가를 내놓았다. 사고 현장이 발견된 지 40분만이었다. 곧이어 이 부대에 내려진 비상이 해제되고 자살이라는 보고가 JSA 소대장, 대대상황실을 거쳐 연합사, 1군단, 3군 등으로 잇따라 전해졌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비전문가인 일선 지휘관의 현장 판단 하나로 자살이라는 전제하에 군 사법체계는 사건을 정리하는 수순을 재빨리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감식한 미군 현병대(CID)도, 부검을 담당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도, 관할 1사단 현병대도 이 사건이 타살이거나 사고사일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유족측 변호인인 안병희 변호사는 군내 사법체계 어느 한 단계에서도 상황 자체를 의심해보았다면 이 사건규명의 열쇠는 의외로 쉽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비전문가인 지휘관의 상황 판단이 곧 법적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는 군내 의문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천여쪽을 넘는 군 수사기록상에 나타난 김 훈 중위 의문사 사건 조사과정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자살에 사용됐다는 총기가 본인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소대원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2시간 가까이나 지나고 나서야 당일 무엇을 했느냐는 식의 설문조사식 진술조서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지역이 유엔군 관할 지역이어서 사건 현장에서 유일한 법률 전문가였던 1사단 군검찰관 김모 중위는 현장 감식은 우리가 한다며 접근을 제지하는 미 CID 요원들에 막혀 물끄러미 사건 현장 주위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부대원 옷가지 등 단서가 될 만한 증거물들을 수집해 미리 조사했다면 지금처럼 소대원 전원이 타살 의혹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군 수사체계의 허점을 시인했다.

김 훈 중위 사건에 대한 군 수사의 허점이 가장 잘 드러난 예는 부검이다. 사건 현장을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검이 부실해 결국 이 사건을 의혹의 소

용돌이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사망 뒷날인 지난 2월 25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뤄진 부검에서는 부검의가 부검의 기초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사진조차 보지 않고 부검을 한 것으로 최근 국회 김 훈 중위 의문사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하경근)에서 확인됐다. 군의관의 응급조치 등으로 시신은 당연히 원래 모습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검의가 현장 사진을 보고 비교해가며 부검하는 수사의 상식이 무시됐던 것이다. 소위 증언 과정에서는 부검의 이상한 대위와 1사단 헌병대 김종섭 준위 간에 현장 사진을 제출 받지 않았다,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런 부실한 부검은 나중에 총기가 김 중위의 관자놀이에 밀착한 상태, 즉 접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1~5센티미터 떨어진 근접사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뒤집혀 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됐다. 이 외에도 시신이 부검 뒤 곧바로 화장되고, 사건 현장은 다음날 곧 바로 페인트칠이 이뤄지는 등 사건 과정 곳곳에는 졸속 처리가 연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는 이 같은 졸속 처리가 수사의 전문성이나 객관성보다 지휘관의 의도가 더 중시되는 군 풍토와 군 사법체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즉, 지휘권이 사법권 위에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사고 등 군내 각종 사고는 각급 부대의 헌병대가 초동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헌병대는 김 훈 중위 사건처럼 논란이 있는 복잡한 사건·사고를 처리할 만한 전문성을 거의 못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휘관의 의도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밝혀질 경우 결국 부대 관리 문제 등으로 지휘관 자신에게 문책이 돌아올 것이 뻔한데, 이 지휘관에 소속된 헌병대가 사건의 객관적인 규명에 적극 나설 수 있겠느냐는 얘기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휘관과 헌병대를 견제해야 할 군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사단급 부대에 1~2명이 배치돼 있을 뿐인 군검찰관은 이제 갓 사법시험에 합격한 중·대위급 장교들인데다, 수하에 수사 인력도 거의 없어 군법 교육 등 주어진 일처리에도 허겁지겁한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 사회에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

는 것처럼 헌병대를 견제할 수사 지휘권마저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고 일선 군 검찰관들은 토로하고 있다.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 받아 조사해보면 헌병대 수사의 허점을 자주 목격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다면 수사 인력도 거의 없고 부대 파악조차 힘든 판국에 이런 민감한 사건을 담당해 지휘관을 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부분의 사건이 법전문가도 아닌 각급 예하부대 헌병대 수사관들에 의해 지휘관의 의도에 맞춰 졸속 처리되다 보니 의문사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때문에 군내 의문사 민원은 전혀 해결 기미가 없는 가운데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3년 14건 등 해마다 군내 의문사 관련 민원이 10건 전후로 제기되고 있고, 올해는 10월말까지 무려 32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 93년 한때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군검찰관에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병쪽의 압력에 밀려 포기했으며,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도 이 조항은 아예 빠져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의 지적에 따라 군사법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유경환 법무관은 사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군검찰관의 수사지휘권 확보 등 군내 사법체계의 정비가 절실하지만 지휘권이 우선시되는 풍토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 1) 얹히고 설킨 김 중위 사건—유족·군 관계자도 “각별한 인연”

김 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은 지난 10개월여 동안 사건만큼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극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돼 왔다. 이 사건이 발생한 판문점은 김 중위의 부친인 김 척씨(55·예비역 중장)가 얼마 전까지 군단장으로 복무했던 1군단 지역. 게다가 이 사건이 처음 군내 계선을 타고 보고될 때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보고를 받은 김동진 육군참모총장은 바로 김 척씨의 육사 21기 동기생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동기 중 선두를 다퉈온 선의의 라이벌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1사단과 1군단 헌병대가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은 뒤에 유족측의 항의가 계속

되자 사건을 다시 재조사한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주임 검사인 심우정 대위(27)도 김 훈 중위가 동생의 친구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심대평 충남지사의 아들이기도 한 심 대위의 동생이 바로 김 훈 중위의 육사 동기생이었기 때문이다.

김 훈 중위의 자살, 타살을 둘러싼 공방의 당사자가 바로 육사 동기, 동생친구 등으로 연결되는 기묘한 인연인 것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김 척 장군은 사건 초기 김 총장에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김 중위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하기도 했고, 김 총장도 1사단 및 1군단 헌병대를 통해 수 차례 사건의 정확한 규명 등을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특수한 관계 탓인지 국방부는 이 사건 규명을 위해 적잖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기록만 해도 1사단, 1군단 헌병대를 거치면서 1천여쪽 분량으로 늘어나 있었다.

타살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미 유족측의 요구에 의해 상당 부분 이뤄졌던 것으로 수사기록상에는 나타나 있다. 타살로 가정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있는 최초 신고자 및 현장 목격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네가 소대장을 썼나? 범인을 알고 있나?’ 등 4개 설문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로 나타났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김모 중사의 경우 1사단, 1군단 헌병대를 거치며 4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지난 3월말 신문 내용에는 아예 당신이 김 중위를 쏜 것 아니냐는 직접적인 질문까지 포함돼 있었다. 김 중사는 당시 이에 대해 군장성 출신 가족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부담감을 주어 자살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대를 나쁘게 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건 기록에는 이 사건의 의혹을 캐기 위한 유족들의 눈물겨운 노력도 잘 드러나고 있다. 유족들은 과학적으로 국방부의 자살 결론이 갖는 의문점을 캐기 위해 김 중사 등 최초 현장 목격자 3명을 사건 20일 만인 지난 3월 14일 직접 경기도 기흥에 있는 김 척 장군 집에서 면담했고 20여명에 이르는 전역 사병들도 일일이 만났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장군은 유엔군사령관인 틸럴리 장군에게 직접

사건 규명을 요청하는 영문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기록상에는 유족들이 용하다는 스님이나 수녀님에게 물어봐도 타살이라고 하더라는 부분도 들어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했던 유족들의 간절한 심정의 일단이 잘 나타나 있다.

유족 측의 한 변호인은 결국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을 해명하는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다른 의문사 사건에 비해 김 훈 중위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명쾌하게 이 사건이 규명되지 않은 것은 위낙 초동수사와 부검 등이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998. 12. 16. 조선일보)

### 3. 체벌, 구타, 가혹행위...

교사가 학생을 때리자 학생이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이 교사를 ‘연행’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줬다. 교실에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여학생, 자식을 때렸다고 교사에게 행패를 부린 학부모도 있었다. 교권이 흔들린다는 개탄과 함께 시비의 발단이 된 체벌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교육 차원의 체벌은 합당한 것인가. 불가피하다면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김 훈 중위 사망 의혹사건을 계기로 군의문사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중이다. 군의문사는 구타나 얼차려(기합), 총기사고 등으로 숨진 사건을 본인 잘못으로 돌리거나 자살로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타가 금지된 뒤 군내 기강이 흔들리고 거꾸로 ‘상급자 길들이기’까지 생겨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범인이 분명한데도 막무가내 ‘오리발’을 내미는 피의자를 앞에 두고, 우격다짐으로 자백을 받아내던 ‘지름길’을 놔둔 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답답함에 자기 가슴을 치는 수사관들도 있다고 한다. ‘총격요청’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안기부 담당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으레 그러려니 하며 통용됐던 것들이 새삼 문제로 불거진다. 기존 질서와 가치관이 흔들리고 아직 새로운 질서는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지러이 나타나는 단면들이다. 학원도 군대도 경찰에도, 집단의 성격에 따

라 형태만 다를 뿐,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투영돼 나타나기 마련이다. 체벌, 기합, 구타, 고문, 가혹행위 등을 동렬에 놓기에는 적절치 않을지 모른다. 특히 교사의 체벌은 차원이 다르다고 항변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다.

그러나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가졌든 육체적 고통을 주는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폭력’이 어느 선까지 용인되는지는 그 사회의 가치관, 믿음, 관습 등과 상관관계를 이를 터이다.

단체생활을 꾸려가려면 선의의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밖에서 막연히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부닥친다. 학원을 보자. 입시위주의 비뚤어진 경쟁교육 체제에서 인간교육을 강조하기도, 한 반에 40여명을 몰아넣으면서 모든 학생에게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정교육이 부실한 터에 선생님의 권위마저 빼앗겨 도전 받고 있다. 인간사회이기에 빗나간 학생, 못된 학부모가 있듯이, 감정폭발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도 있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한창 혈기방장한 청년들을 징집해 군대란 울타리에 넣은 상황에서 뾰족한 통제수단이 없다고 한다. 상명하복의 계급질서가 생명인 특수집단에서 고참들의 얼차려나 웬만한 구타행위는 알고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쥐꼬리만한 봉급에 혹사를 강요하면서 선진 과학수사와 인권을 역설하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교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체벌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는 안된다. 군이나 경찰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구타나 가혹행위를 방지하거나 의문사를 덮어둘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시각을 달리해 보면, 체벌 논란이 일고 구타문제가 불거지고 고문시비가 이는 것은 그동안 안으로 깔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일부 극단적 사례를 놓고 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질적 병폐가 건전하게 치유될 계기를 맞았음을 반겨야 할 것이다. 전환기일수록 큰 틀에서 원칙에 맞도록 사고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세워가야 한다.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

한 정별이 불가피하다면, 그 집단의 특수성에 걸맞은 현실적이고도 세밀한 내부 규정을 제도화해서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새 질서가 자리잡으면 다소의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 과도기의 부작용에 놀라 시대흐름에逆行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1998. 12. 21. 한겨레신문)

#### 4. 군의문사 재조사 ‘시늉만’

80년대 이후 군에서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군당국의 재조사가, 애초 약속한 민·군 합동 형식이 아닌 군 자체 조사에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유가족 단체들은 아예 피해사례를 접수시키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특조단, 단장 양인목 중장)은 유가족으로부터 접수한 의문사사건 69건에 대해 각 군이 자체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13건은 자살로 판명나 조사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특조단은 이 중 10건은 유가족에게 통보했으며, 나머지 3건도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육·해군 등 각 군은 이번 조사에서 현장조사나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과거 수사기록만 다시 검토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초의 약속과 달리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에 참여시키거나 민간, 검·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재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민간과의 공조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단체들은 “국방부 특조단 인력은 ‘의문사처리과’에 대령 1명, 중령 2명 등 9명에 불과하고 각 군의 조사인력도 7~8명뿐”이라며 군의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혜숙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21건을 접수했으나 군 당국이 과거 수사기록만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군내 의문사 22건을 파악하고 있으나 재조사 대상으로 접수하는 것을 거부했다.